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보 수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하여 총보수의 1000분의 30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 및 육아지원 확대를 위하여 육아휴직수당 등이 지급되는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연봉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1항제2호 중 “135만9천1백원”을 “139만9천9백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확정한다”를 “대신하거나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해 확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1년 6개월
(해당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에 한함)

나. 셋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 3년

제14조제3호 중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단서 중 “산입하되”를 “산입하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6개월까지
산입하며”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제1호”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제1호 및 제7의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7만7700원으로”를 “8만 원으로”로, “7만6000원”을
“7만8300원”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비례하도록 책정하며”를 “비례하여 지급하며”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835만6천원”을 “860만7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916만7천원”을 “944만2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814만
1천원”을 “838만6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949만3천원”을 “977만
7천원”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 확정 및 승급기간 특례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과 육아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3의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①·② 삭제 ③ ~ ⑩ (생략) ⑪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의 봉급월액은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생략)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u>135만9천1백</u> 원을 뺀 금액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u>139만9천9백</u> <u>원</u> -----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생략)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해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확정해야 하며, 「지방공무원
 법」 제25조의3 또는 「국가공
 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
 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
 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
 례하여 확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조의2제2호·제3호 또는 「공
 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
 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
 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
 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확정하고, 「지
 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
 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
 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
 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
 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
 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
 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

---- 대신하거나 12세 이하 또
 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
 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
 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
부에 대하여 확정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⑤ (생 략)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
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
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
간에 산입한다. 다만, 「지방공
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
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
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
부에 대해 확정한다.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
항 각 호 또는 「공무원수
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
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1년 6개월(해당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에
한함)

나. 셋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
로 한 경우: 3년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의2. (생략)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3의2.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

1. ~ 2의2. (현행과 같음)

3. -----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제2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3의2. -----

-----.

----- 산입하되,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3의3. ~ 7. (생략)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2. (생략)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④ (생략)

제29조의2(근속가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6개월까지 산입하며---

--.

3의3. ~ 7. (현행과 같음)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의3호---
-----.

-----.

1. 2.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학 교원의 경우에는 7만7700원
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7만6000원으로 하되, 근속가봉
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
과하지 못한다.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 책정) ①
~ ⑤ (생 략)

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
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
는 자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
정하며, 그 밖에 연봉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승진시 연봉 책정) ① (생
략)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
에 가산한다. 이 경우 자치경무
관부터 자치경정까지의 자치경
찰공무원은 각각 3급부터 5급까
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 8만 원으로

7만8300원-----

-----.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 책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비례하여 지급
하며-----

-----.

제36조(승진시 연봉 책정)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u>835만6천원</u>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u>916만7천원</u>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u>814만1천원</u>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u>949만3천원</u> 제4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생략) ② <u>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u>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④ (생략)	1. ----- ----- <u>860만7천원</u>----- ----- 2. ----- ----- <u>944만2천원</u> 3. ----- ----- <u>838만6천원</u> 4. ----- ----- <u>977만7천원</u> 제4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라 -----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